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이후 사서교사 배치 및 양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Teacher Librarians' Placement after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강 봉 숙(Bong-Suk Kang)*
박 주 현(Juhyeon Park)**

〈목 차〉

- | | |
|------------------------|------------------------|
| I. 서론 | IV. 사서교사 배치 및 양성 개선 방안 |
| II. 사서교사 배치 관련 법규 및 정책 | V. 결론 및 제언 |
| III. 사서교사 배치 및 양성 현황 | |

초 록

본 연구 목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 이후 사서교사 배치 양상을 고찰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법규, 정책,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50%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신규 사서교사 수요를 추산한 결과, 매년 323명의 신규 사서교사 수요를 예측할 수 있었다. 경기도 등은 정원의 기간제 사서교사 800여 명을 전면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질문지를 통해 2019년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자를 대상으로 소지 교사 자격을 조사한 결과,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설문 참여 인원 122명 중 69명으로 56.6%에 그쳤다. 한편, 사서교사 양성 현황 분석 결과, 2019년 한 해 사서교사 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한 인원은 14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현장 수요는 폭증하는 데 비해, 사서교사 양성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사서교사 양성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대학원 증설 등 사서교사 배치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키워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better way for placement of teacher librarians after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To do this, the literature research is applied for reviewing the policy and current status regarding the placement of school librarian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its willingness to secure the number of job openings for librarian teachers through the midium and long-term plan in the 3rd School Library Promotion Basic Plan. It is analyzed that 323 new teacher librarians need to be recruited every year, after estimating the demand for recruitment of teacher librarians by 2030, considering the 3rd school library promotion basic plan. Schools in Gyeonggi Province and Daegu with no school library personnel exclusively in charge of libraries have been allocated with temporary teacher librarians, as an attempt to comply with the legal obligation to place exclusive staff for libraries, faced with practical challenges of recruiting new teacher librarians in a limited amount of time. But survey through questionnaire method shows only 69 out of 122 survey participants, which account for 56.6%, have proper teacher librarian licen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eacher librarianship status, only 146 people were trained in 2019. As a result, the field demand for librarian teachers surged, but it was found that the conditions for training excellent librarian teachers have not been provid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epare a way to secure a certain level of qualification holders with the qualifications of excellent teacher librarians.

Keywords: School library, Teacher librarian, Enforcement decree of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3rd School library promotion basic plan

* 대구 다사고등학교 사서교사(fineday4u@korea.kr) (제1저자)

** 광주 건국초등학교 사서교사(parkjuhyun12@hanmail.net)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9년 8월 19일 •최초심사: 2019년 8월 28일 •제재확정: 2019년 9월 17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3), 239~259, 2019.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09.239>]

I . 서론

1. 연구의 목적

교수-학습의 수요자인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 강조되면서 변화하는 학교 환경과 더불어 학교도서관은 급격한 움직임에 직면하고 있다. 이 시기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전문성 확보는 학교 교육과정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교육공동체의 수요와 더불어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 배치가 임의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고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시행된 지 한 해가 지났다. 특히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시행이 이뤄지면서 개정발효된 시행령은 학교당 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 시기, 역량을 갖춘 우수한 사서교사를 양성하고 배치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사서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밀착된 학교도서관 교육을 통해 그 교육적 이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주제 전문 사서이기 때문이다.

도서관협력수업을 통한 사서교사의 교수 활동은 학습관련성취욕, 학습실행력, 동기, 교과 흥미를 진작시켜주며(조미아 2014), 자기주도적 정보탐색능력 형성, 수업 중 활발한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 증가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강봉숙 2013)으로,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은 다양히 입증된 바 있다. 특히 학교 내에서 교원과 행정직원이 가지는 교육적 권한과 책임의 차이가 막대한 학교 문화와, 학교도서관이라는 관종만이 가진 고유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 사서교사 배치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사서교사 배치와 관련된 현행 법규와 정책을 살펴보고 실제로 2018년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이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최근의 사서교사 배치 및 양성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서교사 배치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분석

현재, 사서교사 제도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서교사의 양성과 배치 제도에 대해 다루는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전후 시기의 연구를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이전의 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김성준(2010)은 사서교사가 양성과 정을 통해 충분한 전문성을 습득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사서교사 양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의 기본이수과목을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방

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장상황을 반영해 현 8개 기본이수과목에 문현정보교육론, 정보활용 및 협동수업론, 장서개발론을 추가하여 총 11개 교과목으로 구성된 기본이수과목을 제안하였다. 이병기(2011)는 한국과 미국의 사서교사 임용 및 자격시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교사자격시험인 Praxis 중 교과 지식과 교수-학습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는 Praxis II를 중심으로 한국의 교사 임용시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사서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송기호(2012)는 학교도서관 인적자원에 교사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서교사의 교육주제 전문사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격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오남수(2013)는 2010년 기준 전체 학교도서관수(10,937)에 비해 담당직원이 5,150명(47%)에 불과하고 담당직원중 비정규직이 4,391명으로 85%를 차지하며, 사서교사는 724명으로 14%에 그치고 있어 학교도서관 담당직원이 대다수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도서관의 교육과정 참여와 도서관 협력수업을 통한 학교도서관 위상 제고가 어렵다는 점을 들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주현과 이명규(2014)는 학교도서관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학교도서관이 교육성과를 산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적자원 전문성 향상, 교육과정 개선, 장학 및 지원체계 정비, 관련법 개정을 정책적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방향과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이후,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 사이에 이루어진 최근의 연구는 강봉숙(2018)과 김종성(2018)의 연구가 있다. 강봉숙(2018)은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 시에 사서교사 배치 기준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의 불합리한 사서교사 배치 기준으로 인해 사서교사의 배치율이 타 비교과 교사에 비해 유독 낮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타 비교과 교사와 사서교사의 배치에 대한 법령과 현황을 분석하여 사서교사 배치 기준을 타 비교과 교사 배치 기준 수준으로 맞춰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성(2018)은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 학교도서관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향후 개정될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기준안을 제안하고 향후 사서교사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한 사서교사 양성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제언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 이전의 해당 분야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8월,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와 양성 양상을 최신의 자료로 면밀히 살펴보고 사서교사 배치와 양성의 개선 방안을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해당 분야의 현안에 대해 최신성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껴 연구 주제로 채택하였다.

II. 사서교사 배치 관련 법규 및 정책

학교도서관진흥법은 2018년 2월에 개정되었다. 그리고 2018년 8월부터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본격 시행이 이루어졌다. 이에 이 시기부터 현재까지 수립되고 적용되고 있는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에 대한 법규 및 정책을 개괄하고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학교도서관진흥법

국회는 2018년 1월 30일에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인력 배치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 의결하였다. 제12조에서 사서교사 등의 인력을 학교도서관에 배치하는 것을 임의 조항으로 두었던 것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한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표 1> 참조). 이에 학교도서관진흥법은 2018년 2월 21일에 일부 개정되어 6개월 후인 8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도서관계와 교육계에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개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졌으며 관련 논의 역시 매우 활발해졌다.

<표 1>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의 주요 내용 신구법 비교

| 학교도서관진흥법 | |
|---|---|
|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01호, 2016.12.20, 일부개정] | [시행 2018.8.22] [법률 제15368호, 2018.2.21, 일부개정] |
|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생략) |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 |
|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

2.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2018년 2월 21일에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의무 배치와 관련한 조항이 2018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도 개정이 이뤄졌다. 2018년 8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는 <표 2>와 같이 기존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7조에서 사서교사 등의 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내용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준 시행령 제7조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사서교사뿐만 아니라 교원이 아닌 사서의 수까지 합하여 학생 1,500명당 1명의 ‘사서교사 등’을 배치하는 것으로 정원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다. 다른 교원의 경우

모두 교원만을 정원 기준으로 삼는 데 비해 사서교사만 교원이 아닌 인원을 사서교사 정원 기준에 합산한다. 또 하나는 다른 비교과 교사인 보건교사, 영양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정원 산정 기준이 학교 수에 있지만 사서교사만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데 있었다. 이는 비교과 교사 중에서도 사서교사의 배치율이 유독 낮은 결과를 초래했다(강봉숙, 2018).

〈표 2〉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신구법 비교

|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 |
|--|---|
| [시행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타법개정] | [시행 2018. 8. 22] [대통령령 제29099호, 2018. 8. 21, 일부개정] |
| 제7조(사서교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서 신설〉 | 제7조(사서교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설기교사의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 |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치한다.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치한다. |

〈표 3〉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

| 총계 | 26,137 |
|--------------------|--------|
| 교육공무원 계 | 19,957 |
| 대학 | 18,160 |
| 총장 | 38 |
|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 15,296 |
| 조교 | 2,826 |
| 전문대학 | 90 |
| 총장 | 1 |
|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 57 |
| 조교 | 32 |
|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1,086 |
| 교장 | 22 |
| 교감 | 22 |
| 교사 | 1,042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557 |
| 교장 | 16 |
| 교감 | 21 |
| 교사 | 520 |
|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46 |
| 원장 | 1 |
| 원감 | 3 |
| 교사 | 42 |
| 교육전문직 | 18 |
| 교육연구관 | 7 |
| 교육연구사 | 11 |
| 일반직 계 | 6,180 |
| 고위공무원단 | 18 |
| 3급 또는 4급 이하 | 6,099 |
| 전문경력관 | 63 |

〈표 4〉 공립의 각급 학교 국가공무원 정원표

| 총계 | 337,015 |
|------------------------|---------|
|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13,058 |
| 원장 | 420 |
| 원감 | 832 |
| 교사 | 11,806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148,827 |
| 교장 | 5,972 |
| 교감 | 6,108 |
| 교사 | 136,747 |
|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145,012 |
| 교장 | 3,817 |
| 교감 | 3,606 |
| 교사 | 137,589 |
| 특수학교 계 | 14,034 |
| 교장 | 84 |
| 교감 | 105 |
| 교사(유초·중고 특수교사 등 포함) | 13,845 |
|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 16,084 |
| 보건교사 | 7,421 |
| 영양교사 | 5,591 |
| 사서교사 | 962 |
| 전문상담교사 | 2,110 |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3호)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비교과 교사 배치 기준이 학교 규모와 학교 수에 배치 기준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사서교사 배치만이 학생 수에 근거한 기준을 둔 점을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은 여전히 다른 비교과 교사와 달리 사서교사의 배치에 있어서만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 모두를 포함한 채 교원인 사서교사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은 여전히 타 비교과 교사 배치와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시행령에 신설된 단서 역시 모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는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에 대해서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는 부분을 말한다. 우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표 3>과 같이 각급 학교의 교사 정원은 규정하고 있지만, 비교과 교사의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전체 교사의 총정원제 안에서 사서교사의 정원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을 가진다. 더불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서교사 정원을 타 비교과 교사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원표는 그해 2월 초에 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한 신규 교사의 수 등을 반영하여 매년 2월 말에 개정되는 상황이다. 즉, 해당 규정은 사서교사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조정하는 배정 기준과 배정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은 사서교사 등 전반적인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정원을 학교당 1명으로 규정한 점에서 혁신적이지만, 교원인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아 개정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를 갖고 있다.

3.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

교육부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1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 2008년에서 2013년에, 제2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 2014년에서 2018년에 적용되어 종료되면서,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 2019년 4월 21일에 발표되었다. 이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목표를 주목할 만하다. 이는 타 비교과 교사 배치 비율을 고려해 현재 8% 수준인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선언한 내용이다.

교육부는 제2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서 매년 사서교사를 50명 이상 증원하는 목표를 담은 바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기본계획의 적용시기인 2015학년도에서 201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5년간 438명의 사서교사를 선발하여 매해 평균 88명의 사서교사를 확보하였다(<표 5> 참조). 이를 통해 제2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목표를 비교적 성실히 달성한 바 있다.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를 약 50% 수준으로 충원하는 목표를 수립한 것은 제2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

계획에서 진일보해 사서교사 배치의 중·장기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교도서관 진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표 5〉 비교과 교사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2014~2019)

|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예비 | 계 |
|------|-----|-----|-----|-----|-----|-----|-----|-----|-----|-----|-----|-----|-----|-----|-----|-----|-----------|---------|
| 사서교사 | 34 | 17 | 154 | 104 | 109 | 9 | 24 | 0 | 1 | 0 | 25 | 21 | 0 | 26 | 228 | 163 | (47) | (962) |
| 보건교사 | 142 | 142 | 153 | 92 | 215 | 156 | 170 | 121 | 114 | 108 | 184 | 261 | 324 | 272 | 584 | 532 | (270) | (3,840) |
| 영양교사 | - | - | - | - | 236 | 73 | 71 | 42 | 35 | 47 | 76 | 83 | 77 | 94 | 548 | 412 | (196) | (1,990) |
| 체육교사 | - | - | 60 | 210 | 103 | 12 | 94 | 10 | 266 | 40 | 105 | 110 | 105 | 131 | 567 | 575 | (146) | (2,534) |

III. 사서교사 배치 및 양성 현황

1.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동향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보에 대한 움직임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문헌연구 등으로 사서교사를 비롯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와 관련된 주요 동향을 수집해 정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이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관련 동향

| 시기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관련 동향 |
|----------|---|
| 2018.06. | 시·도교육청, 2019학년도 사서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 41명 예비 발표 |
| 2018.08. |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
| 2018.10. | 시·도교육청, 2019학년도 사서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 163명 발표 |
| 2018.11. | 경기도교육청, 전담인력 미배치된 전체 학교도서관 750여 개관에 사서교사 전면 배치 계획 발표 |
| 2019.01. | 대구광역시교육청, 전담인력 미배치된 학교도서관에 기간제 사서교사 102명 모집 공고로 34명 선발 |
| 2019.01. | 경기도교육청, 전담인력 미배치된 학교도서관에 기간제 사서교사 734명 모집 공고로 424명 선발 |
| 2019.01.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에 공공도서관 소속 사서직 공무원 4명 과연 |
| 2019.02. | 시·도교육청, 2019학년도 사서교사 임용시험을 통한 신규 사서교사 163명 선발 및 배치 |
| 2019.04 | 교육부,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50% 수준 사서교사 배치 목표 포함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발표 |
| 2019.04 | 강원도교육청, 사서교사 배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공무직으로 학교 사서 신규 채용 금지 계획 발표 |
| 2019.05. | 경기도교육청, 전담인력 미배치된 학교도서관에 자격요건 완화해 기간제 사서교사 모집 재공고 및 100여 명 선발 |
| 2019.06.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사서 퇴직 등 자연 감소 인원 충원을 위한 교육공무직 사서 83명 채용 공고 |
| 2019.06. | 시·도교육청, 2020학년도 사서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 46명 예비 발표 |
| 2019.07.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사서 퇴직 등 자연 감소 인원 충원을 위한 교육공무직 사서 26명 채용 공고 |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이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동향을 분석한 결과, 기간제 사서교사에 대한 현장 수요가 폭증한 점이 두드러졌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3호)

미배치된 전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중·장기 목표 수립을 통해 타 비교과 교사 수준으로 사서교사 정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2019년 6월에 2020학년도 사서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의 예비 정원을 4명만 발표한 채, 2019년 7월에 교육공무직 사서 26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학교도서관 진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학교도서관 인력을 여전히 교육공무직으로 충원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교육감에게 교육공무직 사서 채용을 중단하고 사서교사 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청원이 2019년 7월 21일에서 8월 20일에 진행되기도 하였다.

한편, 경기도와 대구 등은 신규 사서교사 임용을 통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일순간에 보충할 수 없는 현실에 따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에 기간제 사서교사를 배치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에서 정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의무 조항을 준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이슈는 경기도교육청의 사서교사 배치 계획과 채용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수가 2,402여 개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체 학교도서관 수인 11,780개관의 20%를 상회하는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사례가 전국의 교육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감은 2018년 11월 14일에 독서교육과 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해 7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기존 사서 배치학교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2019학년도에 734명의 기간제 사서교사 모집 공고를 발표하여 기간제 사서교사를 선발하였다. 하지만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424명만이 채용되었다. 나머지 310명에 해당하는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 정원은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를 구하지 못하여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4월 이후에 자격요건을 완화한 2순위 자격 요건을 추가하여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공고를 재공지하였다. 이는 <표 7>과 같이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다른 교사 자격증과 사서 자격증을 동시에 소지한 교원도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 타 교사 자격증과 사서 자격증을 동시에 소지한 100여 명이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공고로 충원되었다. 하지만 2순위 자격 요건을 느슨하게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기간제 사서교사 응시자가 없어 경기도교육청 관내 약 210개 학교도서관에는 여전히 전담인력 충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관련 상황은 더 좋지 않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전무한 학교도서관에 추가로 공무직 사서를 채용하지 않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102명에 해당하는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공고를 발표했다. 그러나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기간제 사서교사 응시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간제 사서교사 2, 3순위 자격 요건에 다른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거

나,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지원이 없을 경우 다른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여 사서교사는 물론 사서 자격증도 소지하지 않은 70명가량의 교원이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충원되어 학교도서관 운영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서 정한 전담인력이 아닌 형태의 인력이 학교도서관 운영을 맡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정원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서직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타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는 차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표 7〉 경기도와 대구광역시의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공고 예시

| 채용지역 | 모집인원 | 업무내용 | 자격요건 |
|--------|------|------------------|--|
| 경기도 | 1명 | 독서 교육 및 도서관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서교사(정1,2급) 또는 유초중등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정사서(1,2급) 혹은 준사서 자격소지자 - 국가 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 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 수행 가능자 -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자 (만65세 미만) 가능 |
| 대구 광역시 | 1명 | 사서교사, 복지 상담업무 병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서교사(1,2급) 자격 소지자(대구시교육청 인력풀 등재자) 2) 초등교사(1,2급) 자격 소지자(대구시교육청 인력풀 등재자) <p>※ 사서교사 자격소지자 우선 채용 ※ 지원자 중 전문사서교사 자격 소지자가 없을 경우 초등교사 자격소지자 채용</p> |

대구광역시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복지 상담 업무를 병행하는 업무 범위를 제시한 부분 등 불합리한 내용 역시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대구에서 기간제 사서교사로 일하는 경험을 쌓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8〉 연구 대상자의 변인별 분포 상황

| 변인 | | 빈도(%) | 전체(%) |
|-----------|----------|------------|-------------|
| 성별 | 남 | 10(8.2%) | 122(100.0%) |
| | 여 | 112(91.8%) | |
| 근무학교 설립유형 | 국공립 | 103(84.4%) | |
| | 사립 | 19(15.6%) | |
| 근무학교 소재지 | 대구광역시 | 78(63.9%) | |
| | 경기도 | 44(36.1%) | |
| 근무학교 급 | 초등학교 | 72(59.0%) | |
| | 중학교 | 28(23.0%) | |
| | 고등학교 | 19(15.6%) | |
| | 특수학교 | 3(2.5%) | |
| 소지 교사 자격 | 사서교사 | 69(56.6%) | |
| | 전문상담교사 | 10(8.2%) | |
| | 초등 정교사 | 14(11.5%) | |
| | 중등 정교사 | 27(22.1%) | |
| | 초중등 특수교사 | 2(1.6%) | |

이러한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양상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위해 SNS와 기

간접 사서교사 연수 등을 통해 연구 목적을 홍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19년에 경기도 교육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에 기간제 사서교사 정원으로 채용된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자가 가진 교사 자격증을 조사하였다. 해당 연구 대상 122명의 분포는 <표 8>과 같다.

그리고 변인에 따른 소지 교사 자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해당 인력이 소지한 교사 자격은 여러 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먼저,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 학교(61.2%)보다 사립 학교(31.6%) 소속 인력의 사서교사 자격 소지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경기도교육청(100.0%)에 비해서 대구광역시교육청(32.1%)에 소속된 인력이 사서교사 외의 다른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채 채용된 사례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교(62.5%)보다는 중학교(53.6%), 고등학교(15.6%)로 급이 올라갈수록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기간제 사서교사의 변인별 소지 교사 자격 양상

| 변인 | | 소지 교사 자격 | | | | |
|------------------------------|------|-------------|------------|-----------|-----------|-------------------------------|
| | | 사서교사 | 중등 정교사 | 초등 정교사 | 전문상담교사 | 특수교사 |
| (χ ² =30.758***) | 국·공립 | 103(84.4%) | 63(61.2%) | 16(15.5%) | 14(13.6%) | 10(9.7%) |
| | 사립 | 19(15.6%) | 6(31.6%) | 11(57.9%) | 0(0.0%) | 0(0.0%) |
| (χ ² =52.862***) | 지역 | 대구 | 78(63.9%) | 25(32.1%) | 27(34.6%) | 14(17.9%) |
| | 경기 | 44(36.1%) | 44(100.0%) | 0(0.0%) | 0(0.0%) | 0(0.0%) |
| (χ ² =124.599***) | 학교급 | 초 | 72(59.0%) | 45(62.5%) | 3(4.2%) | 14(19.4%) |
| | 중 | 28(23.0%) | 15(53.6%) | 13(46.4%) | 0(0.0%) | 0(0.0%) |
| | 고 | 19(15.6%) | 9(47.4%) | 10(52.6%) | 0(0.0%) | 0(0.0%) |
| | 특 | 3(2.5%) | 0(0.0%) | 1(33.3%) | 0(0.0%) | 2(66.6%) |
| 전체 | | 122(100.0%) | 69(56.6%) | 27(22.1%) | 14(11.5%) | 10(8.2%) |
| | | | | | | * p<.05, ** p<.01, *** p<.001 |

지역별 변인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 비율 차이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요건이 경기도교육청의 채용 요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채용 시 제시한 업무 범위 등에 불합리한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교육청의 지리적 특성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의 사서교사 양성 인원 분석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비해 경기도교육청은 수도권에 위치해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 사서 자격증 소지자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또 이는 학부 양산 인원의 차이뿐 아니라,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는 사서교육 전공 교육대학원이 전무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응시할 수 있는 인력풀이 극도로 빈약하기 때문에 채용 요건을 매우 느슨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대구광역시가 대규모 도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강원도 등 도 단위 교육청에서 신규 임용 사서교사 외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상황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 비율이 낮은 점은

국·공립 학교와 초등학교가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에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에 있어 보다 투명한 채용 요건 적용과 업무 범위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의 점검이 필요하겠다.

2.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2019년 4월 기준 배치 현황을 정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 이후의 보다 최신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매년 4월 기준으로 수집되는 교육통계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2019년의 자료는 2019년 8월 말 이후에 공개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2019년 8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10>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2019. 4. 1. 기준)

| 교 육 청 | 금 | 학교 수 | 학교 도서관 수 | 사서교사 | 학교회계직 (사서) (무기계약직) | | | 학교회계직 (사서) (계약직) | | | 학진법 기준 전담인력 전담인력을 배치율 | 학진법 기준 전담인력 전담인력을 필요 충족 현황 | '30년까지 총워목표 사서교사 추산 (학령인구 감소율 반영) | | | | | | |
|-------------|---|---------|----------------|--------------|--------------------|------------|-----------|--------------------|-----------------------|--------------------|-----------------------------------|--|--|-----------|--------------|-------------|------------|------------|------------|
| | | | | | 정규직 | 기간제 | 장규직 사서 |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 사서 자격증 미소 지자 |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 사서 자격증 미소 지자 | | | | | | | | |
| 서울 | 초 | 600 | 599 | 35 | 0 | 0 | 76 | 366 | 90 | 6 | 15 | 3 | 498 | 83.1 | 102 | 265 | 199 | | |
| | 중 | 390 | 390 | 0 | 0 | 0 | 96 | 223 | 7 | 5 | 55 | 0 | 379 | 97.2 | 11 | 195 | 152 | | |
| | 고 | 320 | 317 | 161 | 16 | 0 | 3 | 5 | 4 | 5 | 14 | 7 | 204 | 64.4 | 116 | 0 | 0 | | |
| | 특 | 30 | 22 | 1 | 1 | 0 | 0 | 0 | 0 | 0 | 1 | 0 | 3 | 13.6 | 27 | 14 | 11 | | |
| 계 | | | | 1,340 | 1,328 | 197 | 17 | 0 | 175 | 594 | 101 | 16 | 85 | 10 | 1,084 | 81.6 | 256 | 473 | 325 |
| 부산 | 초 | 304 | 304 | 20 | 0 | 0 | 15 | 60 | 0 | 0 | 2 | 1 | 1 | 97 | 31.9 | 207 | 132 | 98 | |
| | 중 | 173 | 173 | 21 | 0 | 0 | 10 | 25 | 0 | 0 | 0 | 0 | 0 | 56 | 32.4 | 117 | 66 | 46 | |
| | 고 | 144 | 143 | 17 | 17 | 1 | 7 | 0 | 0 | 0 | 2 | 2 | 2 | 27 | 18.9 | 117 | 55 | 39 | |
| | 특 | 15 | 1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5 | 8 | |
| 계 | | | | 636 | 635 | 58 | 1 | 7 | 25 | 85 | 0 | 0 | 4 | 3 | 180 | 28.3 | 456 | 260 | 190 |
| 대구 | 초 | 229 | 229 | 17 | 19 | 0 | 38 | 102 | 1 | 0 | 1 | 0 | 1 | 177 | 77.3 | 52 | 98 | 72 | |
| | 중 | 125 | 125 | 14 | 11 | 0 | 14 | 38 | 0 | 0 | 0 | 0 | 0 | 77 | 61.2 | 48.5 | 49 | 35 | |
| | 고 | 93 | 93 | 7 | 5 | 0 | 19 | 33 | 0 | 0 | 1 | 0 | 0 | 65 | 69.4 | 28.5 | 40 | 29 | |
| | 특 | 9 | 9 | 0 | 0 | 0 | 2 | 3 | 0 | 0 | 0 | 0 | 0 | 5 | 55.6 | 4 | 5 | 4 | |
| 계 | | | | 456 | 456 | 38 | 34 | 0 | 73 | 176 | 1 | 0 | 2 | 0 | 323.0 | 70.8 | 133 | 190 | 140 |
| 인천 | 초 | 251 | 248 | 23 | 0 | 0 | 13 | 66 | 28 | 0 | 2 | 0 | 1 | 104 | 41.4 | 147 | 103 | 75 | |
| | 중 | 133 | 135 | 17 | 0 | 0 | 5 | 36 | 1 | 0 | 2 | 0 | 0 | 60 | 44.1 | 75 | 51 | 36 | |
| | 고 | 125 | 125 | 14 | 11 | 0 | 6 | 26 | 1 | 0 | 4 | 1 | 0 | 50 | 40.0 | 75 | 49 | 35 | |
| | 특 | 9 | 9 | 0 | 0 | 0 | 0 | 1 | 0 | 0 | 0 | 0 | 1 | 11.1 | 8 | 5 | 4 | | |
| 계 | | | | 520 | 517 | 54 | 0 | 1 | 24 | 126 | 2 | 0 | 8 | 1 | 213 | 41.0 | 307 | 206 | 149 |
| 광주 | 초 | 155 | 155 | 12 | 8 | 0 | 26 | 102 | 1 | 0 | 1 | 1 | 1 | 149 | 96.1 | 6 | 66 | 48 | |
| | 중 | 90 | 90 | 14 | 2 | 0 | 20 | 46 | 2 | 0 | 1 | 0 | 0 | 83 | 92.2 | 7 | 31 | 21 | |
| | 고 | 67 | 67 | 7 | 1 | 0 | 17 | 30 | 1 | 1 | 3 | 0 | 0 | 59 | 88.1 | 8 | 27 | 19 | |
| | 특 | 5 | 5 | 0 | 0 | 0 | 0 | 3 | 0 | 0 | 0 | 0 | 0 | 3 | 60.0 | 2 | 3 | 2 | |
| 계 | | | | 317 | 317 | 33 | 11 | 0 | 63 | 181 | 7 | 1 | 5 | 1 | 294 | 92.7 | 23 | 126 | 90 |
| 대전 | 초 | 148 | 148 | 24 | 0 | 0 | 3 | 5 | 3 | 0 | 0 | 0 | 0 | 32 | 21.6 | 116 | 50 | 34 | |
| | 중 | 88 | 88 | 19 | 0 | 0 | 1 | 0 | 2 | 0 | 0 | 0 | 0 | 20 | 22.7 | 68 | 25 | 15 | |
| | 고 | 62 | 62 | 8 | 0 | 0 | 2 | 4 | 1 | 0 | 1 | 0 | 0 | 15 | 24.2 | 47 | 23 | 16 | |
| | 특 | 5 | 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0 | 5 | 3 | 2 | |
| 계 | | | | 303 | 303 | 51 | 0 | 0 | 6 | 9 | 6 | 0 | 1 | 0 | 67 | 22.1 | 236 | 101 | 67 |
| 울산 | 초 | 119 | 119 | 23 | 0 | 5 | 0 | 0 | 2 | 0 | 0 | 0 | 0 | 28 | 23.5 | 91 | 37 | 23 | |
| | 중 | 63 | 63 | 11 | 0 | 3 | 0 | 0 | 0 | 0 | 0 | 0 | 0 | 14 | 22.2 | 49 | 21 | 14 | |
| | 고 | 57 | 57 | 11 | 0 | 2 | 0 | 0 | 0 | 0 | 0 | 0 | 0 | 13 | 22.8 | 44 | 18 | 11 | |
| | 특 | 4 | 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0 | 4 | 2 | 2 | |
| 계 | | | | 243 | 243 | 45 | 0 | 10 | 0 | 0 | 2 | 0 | 0 | 0 | 55 | 22.6 | 188 | 77 | 50 |
| 세종 | 초 | 48 | 48 | 7 | 0 | 0 | 1 | 4 | 5 | 0 | 0 | 0 | 0 | 12 | 25.0 | 36 | 17 | 12 | |
| | 중 | 24 | 24 | 3 | 0 | 0 | 0 | 3 | 3 | 0 | 0 | 0 | 0 | 6 | 25.0 | 18 | 9 | 6 | |
| | 고 | 18 | 18 | 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 | 22.2 | 14 | 5 | 3 | |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3호)

| | | 1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0 | 1 | 1 | 0 | |
|----------|----------|---------------|---------------|--------------|------------|-----------|------------|--------------|------------|-----------|------------|-----------|--------------|-------------|--------------|--------------|--------------|------------|
| 경기 | 총 | 91 | 91 | 14 | 0 | 0 | 0 | 1 | 7 | 8 | 0 | 0 | 0 | 22 | 24.2 | 69 | 32 | 21 |
| | 초 | 1,275 | 1,274 | 67 | 211 | 0 | 243 | 541 | 2 | 1 | 0 | 0 | 0 | 1063 | 83.4 | 212 | 571 | 430 |
| | 중 | 630 | 628 | 34 | 119 | 0 | 114 | 229 | 0 | 2 | 19 | 0 | 0 | 517 | 82.1 | 113 | 281 | 211 |
| | 고 | 475 | 475 | 36 | 94 | 0 | 67 | 140 | 0 | 9 | 31 | 1 | 1 | 377 | 79.4 | 98 | 202 | 149 |
| | 특 | 34 | 25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1 | 2.9 | 33 | 17 | 13 |
| 계 | | 2,414 | 2,402 | 137 | 424 | 0 | 424 | 911 | 2 | 12 | 50 | 1 | 1,958 | 81.1 | 456 | 1,070 | 803 | |
| 강원 | 초 | 349 | 347 | 15 | 3 | 0 | 0 | 64 | 98 | 0 | 0 | 0 | 0 | 32 | 23.5 | 267 | 160 | 121 |
| | 중 | 162 | 161 | 12 | 1 | 0 | 0 | 24 | 46 | 0 | 0 | 0 | 0 | 37 | 22.8 | 125 | 69 | 51 |
| | 고 | 116 | 116 | 12 | 0 | 0 | 0 | 11 | 22 | 0 | 0 | 0 | 0 | 23 | 19.8 | 93 | 46 | 33 |
| | 특 | 7 | 7 | 0 | 0 | 0 | 0 | 4 | 3 | 0 | 0 | 0 | 0 | 4 | 57.1 | 3 | 4 | 3 |
| | 계 | 634 | 631 | 39 | 4 | 0 | 0 | 103 | 169 | 0 | 0 | 0 | 0 | 146 | 23.0 | 488 | 278 | 208 |
| 충북 | 초 | 259 | 255 | 16 | 2 | 0 | 11 | 53 | 5 | 2 | 3 | 1 | 1 | 87 | 34.1 | 172 | 114 | 85 |
| | 중 | 126 | 126 | 11 | 0 | 0 | 11 | 33 | 6 | 1 | 1 | 2 | 2 | 57 | 45.2 | 69 | 52 | 38 |
| | 고 | 84 | 84 | 9 | 0 | 0 | 0 | 0 | 0 | 1 | 0 | 0 | 0 | 10 | 11.9 | 74 | 33 | 24 |
| | 특 | 10 | 1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5 | 4 |
| | 계 | 479 | 475 | 36 | 2 | 0 | 22 | 86 | 11 | 4 | 4 | 4 | 4 | 154 | 32.4 | 325 | 204 | 151 |
| 충남 | 초 | 409 | 406 | 29 | 4 | 0 | 0 | 0 | 0 | 0 | 0 | 0 | 0 | 33 | 8.1 | 376 | 176 | 130 |
| | 중 | 186 | 186 | 18 | 1 | 0 | 0 | 1 | 0 | 0 | 0 | 0 | 0 | 20 | 10.8 | 166 | 75 | 54 |
| | 고 | 117 | 117 | 20 | 1 | 0 | 0 | 0 | 0 | 0 | 1 | 0 | 0 | 22 | 18.8 | 95 | 39 | 26 |
| | 특 | 7 | 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 | 4 | 3 |
| | 계 | 719 | 716 | 67 | 6 | 0 | 0 | 1 | 0 | 0 | 1 | 0 | 0 | 75 | 10.5 | 644 | 293 | 213 |
| 전북 | 초 | 421 | 421 | 23 | 1 | 0 | 2 | 1 | 1 | 0 | 0 | 0 | 0 | 27 | 6.4 | 394 | 188 | 141 |
| | 중 | 209 | 209 | 21 | 1 | 0 | 2 | 2 | 0 | 0 | 1 | 0 | 0 | 27 | 12.9 | 182 | 84 | 60 |
| | 고 | 133 | 133 | 21 | 1 | 0 | 4 | 4 | 0 | 0 | 0 | 0 | 0 | 30 | 22.6 | 103 | 46 | 31 |
| | 특 | 10 | 1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5 | 4 |
| | 계 | 773 | 773 | 65 | 3 | 0 | 8 | 7 | 1 | 0 | 1 | 0 | 0 | 84 | 10.9 | 689 | 322 | 236 |
| 전남 | 초 | 428 | 428 | 2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2 | 5.1 | 406 | 192 | 145 |
| | 중 | 250 | 250 | 7 | 1 | 0 | 0 | 0 | 0 | 0 | 0 | 0 | 0 | 8 | 3.2 | 242 | 118 | 90 |
| | 고 | 137 | 137 | 29 | 4 | 0 | 0 | 0 | 0 | 0 | 0 | 0 | 0 | 33 | 24.1 | 104 | 40 | 24 |
| | 특 | 8 | 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0 | 8 | 4 | 3 |
| | 계 | 823 | 821 | 58 | 5 | 0 | 0 | 0 | 0 | 0 | 0 | 0 | 0 | 63 | 7.7 | 760 | 354 | 263 |
| 경북 | 초 | 471 | 471 | 37 | 0 | 0 | 1 | 1 | 0 | 0 | 0 | 0 | 0 | 39 | 8.3 | 432 | 199 | 146 |
| | 중 | 262 | 262 | 17 | 4 | 0 | 1 | 0 | 0 | 0 | 1 | 0 | 0 | 23 | 8.8 | 239 | 114 | 85 |
| | 고 | 184 | 184 | 19 | 4 | 1 | 1 | 1 | 0 | 0 | 0 | 0 | 0 | 26 | 14.1 | 158 | 73 | 53 |
| | 특 | 8 | 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 | 4 | 3 |
| | 계 | 925 | 924 | 73 | 8 | 1 | 3 | 2 | 0 | 0 | 1 | 0 | 0 | 88 | 9.5 | 837 | 390 | 287 |
| 경남 | 초 | 501 | 497 | 30 | 2 | 0 | 24 | 85 | 0 | 0 | 0 | 0 | 0 | 141 | 28.1 | 360 | 221 | 165 |
| | 중 | 263 | 263 | 14 | 0 | 0 | 19 | 31 | 0 | 0 | 0 | 0 | 0 | 64 | 24.3 | 199 | 118 | 88 |
| | 고 | 190 | 188 | 20 | 5 | 0 | 13 | 24 | 0 | 0 | 0 | 0 | 0 | 62 | 32.6 | 128 | 75 | 54 |
| | 특 | 9 | 9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1 | 11.1 | 8 | 5 | 4 |
| | 계 | 963 | 957 | 64 | 7 | 0 | 57 | 140 | 0 | 0 | 0 | 0 | 0 | 268 | 27.8 | 695 | 418 | 311 |
| 제주 | 초 | 113 | 113 | 1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 | 9.7 | 102 | 46 | 33 |
| | 중 | 45 | 45 | 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 | 20 | 36 | 14 | 9 |
| | 고 | 30 | 30 | 8 | 1 | 0 | 0 | 0 | 0 | 0 | 0 | 0 | 0 | 9 | 30 | 21 | 7 | 4 |
| | 특 | 3 | 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 | 2 | 1 |
| | 계 | 191 | 191 | 28 | 1 | 0 | 0 | 0 | 0 | 0 | 0 | 0 | 0 | 29 | 15.2 | 162 | 68 | 46 |
| 합계 | 초 | 6,080 | 6,062 | 411 | 250 | 5 | 453 | 1,450 | 239 | 9 | 24 | 6 | 2,602 | 42.8 | 3,478 | 2,629 | 1,957 | |
| | 중 | 3,221 | 3,218 | 242 | 140 | 3 | 293 | 691 | 70 | 8 | 80 | 2 | 1,457 | 45.2 | 1,765 | 1,369 | 1,013 | |
| | 고 | 2,352 | 2,346 | 403 | 133 | 10 | 132 | 278 | 29 | 16 | 57 | 12 | 1,029 | 43.7 | 1,324 | 773 | 513 | |
| | 특 | 174 | 154 | 1 | 1 | 0 | 3 | 12 | 4 | 0 | 1 | 0 | 18 | 10.3 | 156 | 86 | 67 | |
| | 계 | 11,827 | 11,780 | 1,057 | 523 | 19 | 881 | 2,428 | 310 | 33 | 162 | 20 | 5,103 | 43.1 | 6,724 | 4,857 | 3,550 | |

전국 11,827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학교도서관은 11,780개관으로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9.6%로 조사되었다. 이에 배치된 정규직 사서교사는 1,057명, 기간제 사서교사는 523명으로 1,580명의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 드물지만 정규직 사서로 학교도서관을 전담하는 인력도 19명 존재하였다.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고용형태로 근무하는 사서는 3,834명이었으며, 그 중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채, 계약직 사서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계약직 사서는 914명이었다. 그리고 사서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채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인력이 310명, 계약직 인력이 20명이었다. 즉, 총 330명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사서 자격조차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학교도

서관진흥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전담인력은 5,103명에 불과했다. 즉, 전국 11,827개교 중 43.1%의 학교만이 학교도서관진흥법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의무 배치 조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6,724개교에 사서교사 등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3. 사서교사 양성 현황

한국도서관협회에서 2018년 12월 발간한 2018 한국도서관연감에 나타난 사서교사 자격 취득 인원은 최근 5년 평균 연간 130명이다. 하지만 이는 2016년까지의 자료만 제시되어 최근의 자격 취득 인원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2019년에 사서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졸업한 인원을 추가로 조사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2019년 사서교사 2급 자격증 취득 인원 추정치

| 지역 | 양성기관 | 한 해 사서교사 2급 자격 양 성 최대 인원 | 학부 졸업을 통한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 인원(2월+8월) | 교육대학원 졸업을 통한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 인원(2월+8월) |
|----------------------------|--------|-----------------------------|---------------------------------|------------------------------------|
| 수도권 | 경기대 | 2 | 3(3+0) | 18(10+8) |
| | 대진대 | 4 | 4(1+3) | 2(1+1) |
| | 덕성여대 | 3 | 3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 동덕여대 | 3 | 3(3+0)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 명지대 | 3 | 2(1+1) | 4(1+3) |
| | 상경대 | 3 | 1(0+1) | 2(0+2) |
| | 서울여대 | 3 | 3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 성균관대 | 3 | 3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 숙명여대 | 3 | 3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 연세대 | 3 | 1(0+1) | 5(1+4) |
| | 이화여대 | 3 | 3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 인천대 | 교직이수 미개설 | 0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충청 | 충인대 | 4 | 2(2+0) | 2(2+0) |
| | 한성대 | 3 | 0(0+0)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 건국대 | 4 | 2(1+1)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 공주대 | 25 | 28(25+3) | 2(0+2) |
| | 중부대 | 교직이수 미개설 | 0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경상 | 청주대 | 3 | 2(2+0)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 충남대 | 2 | 3(2+1)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 한남대 | 3 | 2(1+1)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 경북대 | 3 | 4(2+2)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 경성대 | 4 | 3(2+1)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전라 | 경일대 | 교직이수 미개설 | 0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 계명대 | 5 | 3(3+0)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 대구가톨릭대 | 교직이수 미개설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 1(1+0)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 대구대 | 3 | 4(3+1)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 동의대 | 4 | 4(4+0)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 부산대 | 3 | 2(0+2) | 1(1+0) |
| | 신라대 | 3 | 0(0+0) | 7(4+3) |
| | 광주대 | 3 | 3(3+0)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 진남대 | 2 | 2(2+0)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 전북대 | 2 | 2(1+1) | 2(1+1) |
| | 전주대 | 3 | 3(3+0) | 교육대학원 미개설 |
| 소계 | | 112 | 101 | 45 |
| 2019년 사서교사 2급 자격증 취득 인원 합계 | | | | |
| 146 | | | | |

사서교사 양성 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홈페이지를 조사하고, 유선과 이메일을 통해 연구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구하였으며 기관 정보공개 청구를 병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9년 2월과 8월에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여 사서교사 2급 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한 인원을 정리하였다.

2019년에 양성된 사서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146명 내외로 추정된다. 그 중 문헌정보학과를 통해 교직이수를 하거나 사범대 문헌정보교육과를 졸업하여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학부에서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101명, 2019년에 교육대학원 졸업을 통해 사서교사 자격증을 신규 취득한 인원은 45명으로 조사되었다. 146명을 추정치로 제시하는 이유는 첫째, 이 인원에는 타 학과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통해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대학원의 경우 전수 개별 연락을 통해 정확한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졸업한 인원을 파악하였지만, 정확한 졸업 인원을 확인하지 못한 일부 대학의 정보는 한 해 사서교사 2급 자격 양산 최대 인원을 근거로 추산하였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중·장기 목표가 수립된 상황에서 한 해 평균 양성되는 사서교사 수가 146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경쟁을 거쳐 경쟁력 있는 신규 사서교사가 임용되기 위해서는 선발 인원의 일정 배수 이상 응시자 수 확보는 필수적이다. 물론 최근 10년 사이 사서교사 신규 임용 인원이 적어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진 채 무기계약직 또는 계약직 학교 사서로 일하고 있는 914명의 인원 등 사서교사로 임용되지 않은 채 적채된 사서교사 자격 소지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2030년까지 수요가 예측되는 3,550여 명의 신규 사서교사 정원에 비해 연 146명에 그치는 사서교사 자격 양산 인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원 및 제주 지역에 사서교사 양성기관이 전무하다는 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IV. 사서교사 배치 정책 개선 방안

1. 사서교사 양성 중·장기 계획 수립

사서교사 등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추가 배치 시 모든 정원이 일시에 배치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필수적이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사서교사 배치율 50%의 목표를 발표하였다. 이를 근거로 사서교사 신규 수요를 <표 12>의 우측 두 번째 열과 같이 추산해볼 수 있다.

그러나 사서교사 수요 추산 시, 학령 인구 감소 등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의 변화 등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2030년의 학교도서관 수 추산을 위해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연령별 추계인구를 <표 12>와 같이 조사하였다(중위 추계).

<표 12>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도서관 수 추산 및 필요 사서교사 정원 추산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7세 | 467,903 | 459,346 | 431,705 | 439,266 | 425,492 | 380,294 | 341,496 | 319,865 | 303,570 | 287,819 | 285,451 | 296,038 |
| 8세 | 475,489 | 467,468 | 458,909 | 431,282 | 388,833 | 425,064 | 379,897 | 341,145 | 319,544 | 303,266 | 287,526 | 285,166 |
| 9세 | 458,500 | 453,017 | 469,507 | 459,515 | 450,515 | 409,075 | 388,833 | 358,165 | 324,910 | 304,600 | 307,436 | 287,527 |
| 10세 | 449,129 | 442,534 | 447,592 | 446,570 | 437,940 | 403,539 | 374,965 | 342,113 | 319,009 | 310,351 | 311,176 | 299,527 |
| 11세 | 417,823 | 414,976 | 438,272 | 443,388 | 466,294 | 457,727 | 330,137 | 337,687 | 423,899 | 378,820 | 340,184 | 318,656 |
| 12세 | 419,766 | 418,037 | 445,180 | 438,461 | 474,566 | 468,468 | 367,891 | 380,792 | 337,831 | 424,038 | 378,949 | 340,302 |
| 13세 | 406,923 | 409,032 | 442,499 | 438,416 | 438,400 | 474,340 | 366,547 | 451,749 | 420,159 | 357,659 | 424,038 | 378,849 |
| 14세 | 402,474 | 404,264 | 429,474 | 428,745 | 428,740 | 428,019 | 426,946 | 426,946 | 426,946 | 426,946 | 426,946 | 426,946 |
| 15세 | 470,722 | 437,388 | 429,260 | 438,730 | 476,907 | 443,987 | 337,315 | 473,935 | 463,171 | 426,569 | 429,027 | 426,001 |
| 16세 | 473,523 | 470,925 | 437,107 | 438,217 | 476,394 | 443,406 | 438,736 | 472,227 | 464,520 | 465,949 | 428,408 | |
| 17세 | 508,346 | 474,442 | 470,833 | 437,639 | 429,220 | 448,357 | 476,627 | 443,171 | 436,983 | 474,924 | 464,02 | 426,109 |
| 18세 | 594,278 | 511,707 | 476,259 | 472,535 | 439,046 | 430,385 | 449,539 | 477,372 | 444,257 | 437,396 | 473,210 | 464,869 |
| 계(명) | 5,671,333 | 5,536,746 | 5,456,543 | 5,418,796 | 5,370,496 | 5,310,090 | 5,219,303 | 5,087,508 | 4,911,324 | 4,752,452 | 4,598,012 | 4,418,304 |

| ↓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및 사서교사 정원 추산 | | | | | | | | | | | | |
|---|--------|--------|--------|--------|--------|--------|--------|--------|--------|-------|-------|-------|
| 추산 학령인구 감소율(%) | 100.0 | 97.6 | 96.2 | 95.5 | 94.7 | 93.6 | 92.0 | 89.7 | 86.6 | 83.8 | 81.1 | 77.9 |
| 추산 학교 수(개) | 11,827 | 11,543 | 11,378 | 11,295 | 11,200 | 11,070 | 10,881 | 10,609 | 10,242 | 9,911 | 9,592 | 9,213 |
| 추산 학교도서관 수(개) | 11,780 | 11,543 | 11,378 | 11,295 | 11,200 | 11,070 | 10,881 | 10,609 | 10,242 | 9,911 | 9,592 | 9,213 |
| 추산 사서교사 정원(명) | 1,057 | 1,380 | 1,703 | 2,026 | 2,349 | 2,672 | 2,995 | 3,318 | 3,641 | 3,964 | 4,287 | 4,607 |
| → 교육부,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50% 수준 사서교사 확충 계획 → | | | | | | | | | | | | |
| 추산 신규 사서교사 정원(명) | +323 | +323 | +323 | +323 | +323 | +323 | +323 | +323 | +323 | +323 | +320 | |

현재의 학교 수와 학교도서관 수에서 학령 인구 감소율을 반영해 감소될 학교도서관 수를 예측하고 2030년까지 선발이 필요한 신규 사서교사의 수를 추산해 본 결과는 <표 12>의 하단과 같다. 국가통계의 연령별 추계인구에 따르면 2030년에는 초·중·고 학령 인구가 현재의 78%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은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 등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100%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학령 인구가 현재의 78%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점에 근거해 학교도서관 수를 최소화하여 추산해 보면, 2030년의 학교도서관 수는 최소 9,213개관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이의 50%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사서교사 정원은 4,607명이다. 2019년 현재 정규직 사서교사 현원이 1,057명임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는 3,550명의 사서교사 정원이 현재보다 추가로 확보되어야 한다(<표 12> 하단 참조). 그리고 2030년까지 11년 동안 꾸준하게 신규 사서교사를 정기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매년 선발이 예상되는 신규 사서교사 정원은 최소 323명 내외로 추산할 수 있다. 물론, 정규직 사서교사의 퇴직 등으로 발생할 추가 충원을 고려하면, 신규 사서교사 정원 수요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및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부와 사서교사 양성 기관에서는 사서교사 및 사서 양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우선 교원 자격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교원양성기관평가의 기준을 사서교사 양성기관에 그대로 적용하고 일률적으로 사서교사 양성 정원 감축을 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비정기적 사서교사 선발 등으로 인해 사서교사 자격을 양산하기 위해 기준에 개설되었던 교육대학원도 교원양성기관평가 기준을 염두하여 사서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는 예전보다 훨씬 적은 수인 연평균 150명 내외의 사서교사만이 양산되는 상황이다. 학교도서관 교육의 질은 사서교사가 결정하고 좋은 자질을 가진 사서교사가 선

발되기 위해서 사서교사 자격증의 일정 수 이상 양산은 필수적이다. 사서교사 양성 대학 및 교육대학원은 사서교사 양성 인원의 증원을 위해 교육부와 연합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대책과 계획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증가하는 복수 전공 희망 인원, 다양한 경로를 통한 사서교사 및 사서 자격증 취득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자격 소지자 대상 사서 자격 취득 과정, 그리고 사서교사 자격증 없이 학교 사서로 근무하는 사서 대상 사서교사 자격 취득 과정 등 사서교사와 사서 자격 취득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대학원을 통한 사서교사 양성 인원을 확대하는 등의 실질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인원이 줄속으로 문헌정보학을 공부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운영과 사서교사 및 사서 자격증 소지자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역시 협의체가 함께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2. 사서교사 및 사서 자격 양성 시 학교도서관 관련 교육과정 확대

향후 11,780개관에 이르는 학교도서관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되고 활성화되면, 학교도서관 관종은 도서관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에 대비해 사서교사뿐만 아니라 사서 양성에 대한 교육과정 정비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사서 및 사서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서 보다 확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즉 정보활용교육, 독서교육 영역의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재정비는 향후 학교도서관을 전담하는 인력에게는 물론, 학교도서관 서비스와 연계된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의 타 정보서비스 기관에서 일하는 예비 사서에게도 어린이·청소년 대상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필수 역량을 함양하게 할 것이다.

3. 정규직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확대 촉구

학교도서관에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사서의 수는 3,834명, 그리고 기간제 사서교사는 523명이다. 전체 5,433명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중 4,357명, 즉 80%가 열악한 조건 아래 학교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사서교사는 1,057명, 정규직 사서는 19명으로 전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20%에 불과하다. 이에 보다 안정적인 고용을 통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는 학교도서관 운영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다만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학교 문화 특수성을 고려해 정규직 사서보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통한 사서교사의 배치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규직 사서교사를 일순간에 배치할 수 없

는 현실과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의 사서교사 충원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고려해 2030년까지는 기간제 사서교사 정원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고 그 인원을 점차 신규 사서교사 정원으로 확보해 정규직 사서교사를 충원해 갈 방안을 고민해야 하겠다.

4. 기간제 사서교사 및 학교도서관 사서의 자격 요건 제한

시·도교육청은 기간제 사서교사 및 학교 사서 채용 시에 자격 요건을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정한 인력 범위 안에서 적용해야 한다.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시 사서교사 자격 소지를 필수 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혹은 경기도교육청 수준으로, 타 교사 자격증과 함께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조건 정도까지를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자격 요건의 태협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자격 또는 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구하기 힘들다고 사서교사나 사서 자격증이 전혀 없는 타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조건을 제시하기보다는 채용의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서 자격조차 미소지한 학교도서관 무기계약/계약직 인력의 수가 330명이 이르는 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서 자격 미소지 인력의 경우 일정 기간 내 사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학교 내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하는 인사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정원 산출에서 제외하고 학교도서관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업무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서로 분류된 인원 중 사서 자격 미소지 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금지해야 한다.

5. 학교도서관 장학체계 정비

학교도서관 운영과 사서교사 등의 인사를 관리하고 감독할 시·도교육청 단위 장학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정규직 사서교사가 1,057명에 이르는데 사서교사를 관리·감독할 장학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또 사서교사뿐만 아니라 기간제 사서교사, 정규직 사서, 계약직 사서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역할 조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도서관 교육의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단위 장학체계 정비는 필요하다.

우선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시 복지 및 상담 업무 등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함께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학교 내에서 입지가 부족한 계약제 교원의 신분으로는 학교도서관 교육에 집중하기 힘들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 사서교사에게 학교도서관 업무 범위와 무관한 업무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교도서관 장학체계를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서교사 업무 범위가 아닌 영역을 기간제 사서교사에게 요구하거나, 겸무 교사로 요일을 달리하여 여러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게 하는 업무의 범위는 불합리하다. 이는 자칫 기간제 사서교사 지원자에게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사서교사로의 경험을 쌓기보다는 수험생활만을 이어가며 사서교사 임용시험에 집중

하는 심리를 낳기도 한다. 더불어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및 계약직 사서 역시 기간제 사서교사와 마찬가지로 학교 내의 불합리한 지시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학교 사서에게 학교도서관 운영과 무관한 업무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지거나, 사서교사의 고유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학교도서관 교육까지 사서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강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도교육청은 교원 외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현장 요구가 뜨겁다. 이에 현재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전담인력 구성과 배치 양상의 최근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현재 11,827개 학교 중 11,780개 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설치율이 99.6%에 이르렀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율은 43.1%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6,724명의 추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서교사 배치율은 여전히 전체 학교 수 대비 8.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추가로 필요한 신규 사서교사 수요는 2030년까지 최소 3,550명으로 추산되었으며, 한 해 평균 323명의 신규 사서교사 선발이 예측된다. 하지만 경기도와 대구광역시에서 기간제 사서교사 정원 800여 명이 한 해에 발생하면서,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구하지 못해 기간제 사서교사의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102명의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공고에서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을 34명 내외만 충원하고 나머지는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 정원으로 다른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충원하여 도서관 담당교사의 형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공고로 선발된 인력을 설문조사로 분석한 결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올해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공고로 선발된 인력 중 78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는데 그 중 25명(32.1%)만이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양상의 원인은 사서교사 양성 인원의 부족과 직결된다고 분석한 바, 양성 기관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이 14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배치와 양성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 현장의 사서교사 수요와 양성 기관의 사서교사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육대학원을 통한 사서교사 양성 인원을 확대하는 등 사서교사 양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사서교사 및 사서 자격 양성 시 학교도서관 관련 교육 확대, 정규직 인력 배치 촉구, 기간제 사서교사 및 학교 사서의 자격 요건 제한, 학교도서관 장학체계 정비의 방안을 통해 사서교사 배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이상적인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보가 이루어지는 데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사서교사 및 학교 사서 양성 기관과 수요 기관의 협의가 이뤄지는 기반이 되어 사서교사 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에 대한 보다 심도 깊고 최신성 있는 연구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강봉숙. 2013. 중고등학생이 인식하는 도서관활용수업 편익에 관한 질적 연구.『한국문현정보학회지』, 47(4): 169–186.
- 강봉숙. 2018. 사서교사와 타 비교과 교사의 배치 비교를 통한 사서교사 배치 개선방안 연구.『한국문현정보학회지』, 52(2): 27–47.
- 경기도교육청. <<http://www.goe.go.kr/>> [cited 2019. 8. 1].
- 교육부. <<http://www.moe.go.kr/>> [cited 2019. 8. 10].
-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cited 2019. 8.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cited 2019. 8. 10].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cited 2019. 8. 1].
- 김성준. 2010. 사서교사 양성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한국문현정보학회지』, 44(2): 97–116.
- 김종성. 2018.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과 현안 전망.『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8년도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5월 25일. 부산: 부산대학교, 151–169.
- 대구광역시교육청. <<http://www.dge.go.kr/>> [cited 2019. 8. 9].
- 박주현, 이명규. 2014. 국내 학교도서관교육의 정책적 현안과 과제.『한국문현정보학회지』, 48(1): 299–328.
- 송기호. 2012. 사서교사 자격 제도 및 직무에 대한 반성적 고찰.『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161–180.
- 오남수. 2013.『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정사항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정책전공.
- 이병기. 2011. 한국과 미국의 사서교사 임용 및 자격시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127–149.
- 조미아. 2014. PBL을 적용한 사서교사와 중국어 교과교사의 협력수업 사례 연구.『한국문현정보학회지』, 48(2): 65–88.
- 한국도서관협회. 2018.『한국도서관연감』. <<https://www.kla.kr/>> [cited 2019. 8. 2].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Mi Ah. 2014. "A Case Study of Collaborative Classes between a Teacher Librarian and a Chinese Language Teacher Applying Problem-based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2): 65–88.
-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http://www.dge.go.kr/>> [cited 2019. 8. 9].
-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http://www.goe.go.kr/>> [cited 2019. 8. 1].
- Kang, Bong-Suk. 2013. "A Qualitative Study on Benefits of Library Assisted Instruction Recognized b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4): 169–186.
- Kang, Bong-Suk. 2018.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Teacher Librarians' Placement by a Comparison between Teacher Librarian and Other Teachers Not-teaching the Subject Matt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2): 27–47.
- Kim, Sung-Jun. 2010.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Teachers' Training to Strengthen Teacher Librarians' Expertis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2): 97–116.
- Kim, Jong-Sung. 2018. "Revised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and Current Issues." *KLISS 2018 Proceedings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18. 5. 25. Pusan: Pusan National University, 151–169.
-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https://kess.kedi.re.kr/>> [cited 2019. 8. 19].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kosis.kr/>> [cited 2019. 8. 1].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8. *Korea Library Year Book*. <<https://www.kla.kr/>> [cited 2019. 8. 2].
- Lee, Byeong-Ki. 2011. "A Comparative Analysis Teachers' Certification and Recruitment Examination System in the Korea and U.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127–149.
- Ministry of Education. <<http://www.moe.go.kr/>> [cited 2019. 8. 10].
-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http://www.law.go.kr/>> [cited 2019. 8. 10].
- Oh, Nam Su. 2013. *A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 Revision of the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M.A. thesis, Major in Education Polic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Park, Ju-Hyeon and Lee, Myoung-Gyu. 2014. "Political Issue and Problem of School Library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1): 299–328.
- Song, Gi-Ho. 2012. "A Reflective Inquiry of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Jobs for the Teacher Libraria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161–180.